



# 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협조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간호조무사는 「의료법」 제80조제4항 및 「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」 제13조에 따라 **자격신고('17.1.1.~)를 3년마다** 해야하며, 자격 신고 전 「의료법」 제80조제5항 및 「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에 따른 **8시간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**하여야 합니다.
3. 따라서,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**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**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소속 직원 및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문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17개 시도, 전국보건소

주무관	최우영	간호정책과 전결 2023. 11. 3.	장	임강섭
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

협조자

시행 간호정책과-2809 (2023. 11. 3.) 접수 의료자원과-9763 (2023. 11. 3.)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(어진동) 6층 간호정책과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 044-202-2693 /전송 044-202-3988 / [chldndud@korea.kr](mailto:chldndud@korea.kr)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